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원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1월 24일
발 의 자: 이원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김영철, 박승진, 박유진, 박철성, 서준오, 송도호, 송재혁, 아이수루, 왕정순, 우형찬, 유정인, 이영실, 이종환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최기찬, 최민규, 홍국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에 의한 사회적 재난은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미치고 있으므로 시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,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.
- 또한, 중독사고 발생 시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상황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 의료기관을 관련 센터에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독성물질의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나. 정보 제공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다. 독성물질 사고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추가(안 제5조제2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적 감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,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서울특별시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응급의료정보의제공”을 “응급의료정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의4”를 “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, 같은 법 제3조의4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내”를 “안”으로 한다.

-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(생 략)</p> <p>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1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2.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<u>응급의료정보의제공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3. ~ 8. (생 략)</p> <p>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</p>	<p>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<u>시장은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원인 및 수습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서울 특별시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2. ----- <u>응급의료정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센터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수 있다. 단,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

2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

3. (생략)

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, 같은 법 제3조의4-
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

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안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 (센터의 운영)제2항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수탁기관 자격범위를 확대·변경¹⁾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또한 안 제3조 (시장의 책무)²⁾, 안 제4조 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³⁾등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
- 1)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한 내용으로 조례해석 상 비용발생 요소(Ex.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추가확대 등)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2) 각종 자료 등 확인결과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)제2항제7호에 따라 상호협력은 기추진하고 있어 안 제3조 (시장의 책무)제2항은 **시장의 책무를 강조한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 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 - 3) (정보제공 형태는 홈페이지 게시로 파악) 시민대상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같은 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도 누리집을 운영(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자관리센터 누리집 : <https://www.seoulpcc.or.kr/>)하여 응급의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